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의자 : 정준호 · 조계원 · 양부남

백선희 · 박용갑 · 임호선

복기왕 · 문진석 · 이소영

맹성규 · 최혁진 · 한준호

정진욱 · 염태영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, 복귀자 1인당 1,300만원(중견기업은 900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한함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,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 ·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,300만원(중견기업 900만원)에서 1인당

1,500만원(중견기업 1,100만원)으로 인상하고,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(안 제29조의8제5항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, “1,300만원”을 “1,500만원”으로, “900만원”을 “1,100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 
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